

제273회 고령군의회 정례회  
제1차 본회의, 2021.11.22(월)10:00

고령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
검 토 보 고 서



전 문 위 원

# 「고령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 검토보고

## 1. 제 안 자 : 고령군수

## 2. 제안이유

- 대한민국의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 온 재향경우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, 이를 통해 군민의 안전에 기여하고 군정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 규정(안 제1조~제2조)
- 나. 재향경우회에 대한 지원 대상 규정(안 제3조)
- 다. 보조금 지원신청 및 정산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5조~제6조)

## 4. 관계법령 : 「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」 제5조 및 제15조

## 5. 검토의견

- 본 제정조례안은,
  -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른 정회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업을 정하는 등 재향경우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주민의 안전과 공공질서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것으로써 그 근거와 타당성은 충분

한 것으로 사료됩니다.

○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

- 안 제1조에서 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한 사항을  
안 제3조에서 6조는 재향경우회의 지원사업 신청 및 승인, 정산  
보고에 관한 사항을  
안 제7조에서 8조는 보조금의 반환 및 준용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.

○ 검토결과,

- 이 제정 조례안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15조제3항 ‘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회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.’ 라고 규정하고 있어 재향경우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주민의 안전과 공공질서 의식 고취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
-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